

비관세장벽 모니터링(태국/방콕지사 작성)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변경사항

- 없음

2. 시사점

- 없음

II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식약청은 2022년 12월 31일 마감 예정인 수입허가서 연장을 위한 전자 시스템을 통한 연장 방법 및 필요 서류를 공지함
 - * [붙임1] 태국 보건부 공지
 - * 태국으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태국 수입 면·허가를 받아야 하며, 면·허가를 받은 수입자는 태국 식약청에서 허가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음(갱신주기 3년)
 - 공지일: 2022년03월02일
- 태국 원산지 증명서 사본 제출 일시적 허용. 태국 세관은 4월 16일 세관 공지(No.47/2565)를 게시하여, Covid-19 사태로 원산지 증명서 (Form AK)의 원본 송부가 어려울 경우 일시적으로 사본을 제출 하더라도 통관 가능함을 공지함
 - 공지일 : 2022년 03월 29일
 - 시행일 : 2022년 04월 01일
 - * [붙임2] 태국 관세청 공지

2. 변동사항

- 없음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 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 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업데이트('22.4.18)

* (별첨)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 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고위험군품목 관리대상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해당
문제 성분 COA 제출 또는 샘플검사와는 별도로 사전 FDA에 관리
대상 리스트 삭제를 위한 샘플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해야 하며, 태국
정부 지정 실험실 또는 ISO/IEC 17025 인증 검사기관을 통한 3회
연속 샘플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관리대상에서 삭제됨(검사비용
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 부담)

* 삭제는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던 품목을 수입했던 업체 요청으로 삭제 가능

III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통관거부사례(기준월)

- 없음

2. 시사점

- 없음

1. 관련이슈

- 없음

2. 시사점

- 없음

[붙임1] 관련 공지

식약청 공지

제목 : 2023-2025년 수입허가서 연장

2022년 12월 31일 마감예정인 수입허가서를 2023-2025년으로 연장을 원할 경우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연장이 필요하며 이제부터 e-submission 시스템 통해서 수입허가서 연장 처리가 필요하다.

1. e-submission 시스템 통한 수입허가서 연장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한다. 1.1 Digital Government Development Agency (<https://www.dga.or.th>) 사이트에 접속해 (Open ID) 계정 생성

1.2 <http://food.fda.moph.go.th/Esub/pages/register.php> 에 따라 e-submission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준비해 FDA에 제출한다. (식약청 5번 건물 3층325방) (방콕이 아닐 경우, 각 지역 보건소에 제출)

1.3 e-submission 접근 권한을 받은 후 <https://privus.fda.moph.go.th>에 사업자로 접속 가능하다.

추가 정보는

http://food.fda.moph.go.th/Esub/document/manual/IMPORT_RENEW.pdf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 아래의 허가서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e-submission 통해 송부한다.

2.1 개인 사업자일 경우

- 운영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2.2 법인일 경우

- 운영자 신분증 (사본) - 외국인일 경우 여권 및 워크퍼밋 제출 필요
- 수입식품 판매 관련 사업 목적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상무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등본의 복사본) - 운영자 임명 위임장 (인지세 30바트 부착) - 운영자의 신분증이나 여권 (외국인일 경우) - 위임장 서명권한을 보유한 법인대표자의 신분증이나 여권 사본

3. e-submission 통해서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수입허가서(어.7) 원본 또는 운영자를 임명하는 서류를 식약청 Food Division부서에 제출한다. 모든 사본 서류에 운영자 또는 법인대표자의 사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4. e-submission 통해서 연장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자세한 정보는 <http://food.fda.moph.go.th/Esub/document/manual/payment.pdf> 을 참고한다.

수입허가서가 마감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하며 마감된 수입허가서는 연장할 수 없다. 연장 신청 없이 마감된 수입허가서를 활용하면 마감일부더 하루에 500-1,000 바트의 벌금을 계산해 청구할 것이다.

공고일 2022년 03월 02일

[붙임2] 관련 공지

관세청 공지

NO.47/2565 (2022)

제목: Covid-19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제출 조건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수입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면세 및 관세 감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사본 제출기한을 2022년 9월 30일까지 허용한다.

원산지 증명서

1. Asean-China (Form E)
2. Thai-China (Form E)
3. Thai-China-Singapore (Form E)
4. Asean (Form D)
5. Asean-Korea (Form AK)
6. Asean-Japan (Form AJ)
7. Thailand-Japan (Form JTEPA)
8. Asean-India (Form AI)
9. Thailand-India (Form FTA Thai-India)
10. Asean-Australia-New zealand (Form AANZ)
11. Asean-Hong Kong (Form AHK)
12. Thailand-Chili (Form TC)
13. Thailand-Peru
14.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된 수출업자들이 상품의 원산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1. 아세안지역 자기증명 제도 (Asean Wide Self Certification : AWSC)
2. Declaration of Origin by Approved Exporters
Declaration of Origin by Approved Exporters는 RCEP 협정 하위의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절차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 인증수출자

면세 및 관세 감면 위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제출이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Import Entry Form) 수입 신청서의 비고란(Remark)에 원산지 증명서 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태국어 문장을 기입해야 한다.

- 원산지 증명서인 경우

“ขอใช้สำเนาภาพถ่ายหนังสือรับรองสินค้าเนคตินค้าไปพลาวก่อนและจะนำต้นฉบับหนังสือรับรองสินค้าเนคตินค้ามาแสดงในภายหลัง” (원산지 증명서 원본 추후 제출 예정)이라는 태국어 문장을 기입해야 한다.

- 원산지 인증수출자인 경우

“ขอใช้สำเนาภาพถ่ายคำรับรองสินค้าเนคตินค้าไปพลาวก่อนและจะนำต้นฉบับคำรับรองสินค้าเนคตินค้าซึ่งผู้ส่งออกของรับอนุญาตได้ลงลายมือชื่อด้วยตนเองมาแสดงในภายหลัง”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본 추후 제출 예정)이라는 태국어 문장을 기입해야 한다.

2. 태국 세관에서 수입자는 수입화물 수령 전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제출 신청양식을 제출하고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같이 첨부해야 한다. 신청 양식은 공지 파일 상에 있는 양식 참고.

수입화물 수령 30일 후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원본(Original)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인해 제출이 어려운 경우 30일간 연장 가능하며 만료 날짜 7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수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제출 하지 않을 경우 관세 면제 조건 위반으로 간주해 추후 관세청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적용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공지일 2022년 3월 29일

파차라 아난따씬
관세청 국장